

의안번호	제 37 호
의 결 년 월 일	2006년 11월 28일 (176회)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음 성 군 수
제출년월일	2006년 11월 28 일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7
----------	----

제출년월일 : 2006.11.28

제 출 자 : 음성군수

소관 부서 : 재무과

1. 제 안 이 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212호2006.5.24)』이 제정됨에 따라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함.

2. 제 정 주 요 내 용

□ 금고지정 (안 제3조)

- 경쟁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
- 일반회계: 1금고지정 (단일금고)원칙
- 특별회계 및 기금: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지정 가능
- 금고의 약정기간: 3년

□ 지정기준 (안 제4조)

-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 증진등에 기준
- 평가심의 기준항목(5개항)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음성군 조례 제 호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군 재정관리를 위한 군금고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금고지정) ①군수는 경쟁 또는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할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 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 할 수 있다.

③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4조(금고 지정기준) ①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거 심사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②금고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세부 심의항목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구성) ①군수는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2. 금고지정 방식 및 약정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
3.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
5. 기타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군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금고약정 만료 4개월 전부터 새로운 금고약정 시 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금고 지정절차) ①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지정방식을 경쟁방법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금고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최소 2개월전까지 군보등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대상 금융기관에 배포하거나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지정기준등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표에 의거

되어야 한다.

제10조(참석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참석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음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그 약정기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금 고 지 정 평 가 기 준 (제4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총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안정성	소 계	3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실태 평가	15	
	나. 재무구조 현황	20	
	- BIS 자기자본비율	7	
	- 자기자본 이익률	5	
	- 무수익 여신비율	5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3	
2. 군에 대한 대출및 예금금리	소 계	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5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5	
3. 주민이용편의및 지역사회 기여도	소 계	20	
	가. 관내지점 및 지역주민이용편의성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다. 지역사회기여실적 및 계획	10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소 계	20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다. 전산처리능력	5	
	라. OCR센터 운영계획	5	
5. 군과 금고간 협력 사업 추진능력	소 계	10	
	가. 군과 협력사업 추진실적	5	
	나. 군과 협력사업 추진계획	5	

[별지 제1호서식]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안정성 심사표

금융기관명 :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점 수	비 고
계		35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안정성	가.외부기관의 신용상태 실태평가	(15)		
	나.재무구조 현황 비율	(20)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7)		
	-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5)		
	- 무수익 여신비율(건전성)	(5)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3)		

심사자 심의위원

(인)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심사표

금융기관명 :

항 목	예금종류 및 기간		금리(%)	배 점	점 수	비 고
계				15		
정기예금 예치금리	정기예금	1-3월		(5)		
		4-6월				
		7-9월				
		10-12월				
		1년이상				
공금예금 적용금리	보통예금			(5)		
자치단체 대출금리	대 출	1-3월		(5)		
		4-6월				
		7-9월				
		10-12월				
		1년이상				

심사자 심의위원

(인)

3. 주민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심사표

금융기관명 :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점 수	비 고
계		20		
관내지점및 지역 주민이용 편의성	가. 음성군소재 점포수 나. 음성군소재 점포의 가계자금 대출실적 다. 기타 주민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시책	(5)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실 적 및 계획	가. 음성군소재 점포의 중소기업 자금 및 농축산자금대출실적 나. 음성군소재 점포의 주택자금 대출실적 다. 음성군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관단체, 개인등에게 현물, 현금등을 기부한 실적 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금 대출계획 마.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10)		

심사자 심의위원

(인)

4. 금고업무관리능력 및 전산처리능력 심사표

금융기관명 :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점 수	비 고
계		20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가. 군 세입금의 세입통장에 의한 신속한 이체 방안 나. 재무회계규칙 제104조에 의한 제장부 비치여부	(5)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가. 금고업무수행 경험 나. 금고선정참여 공고일 현재 맡고 있는 자치단체 금고수 다. 금고업무수행을 위한 점포 설치,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라. 지방세 정기분 수납등 일시적 업무폭주에 대한 인력배치등 대책 마. 수납대행점의 세입금 누락 및 지연처리에 대한 관리대책	(5)		
전산처리능력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등 전산처리 능력	(5)		
OCR센터운영 계획	OCR 프로그램 판독기등 전산장비 프로그램설치현황	(5)		

심사자 심의위원

(인)

5.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추진능력 심사표

금융기관명 :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점 수	비 고
계		10		
군과 협력사업 추진 실적	가. 장학금 지원 나. 체육·문화행사 지원 다. 지역내 시설물설치 및 지역 환경보전과 문화유산 발굴 지원실적	(5)		
군과 협력사업 추진계획	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투자 및 지원계획(기부금 포함) 나. 기타 사업	(5)		

심사자 심의위원

(인)

관 계 법 령 발 취

구 분	내 용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약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제 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 정 자 치 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1. 총 칙

Ⅰ 목 적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Ⅱ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관리(管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③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지정금융기관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④ 금고의 수

- 일반회계 : 1금고 지정(단일금고)
- 특별회계 : 특별회계별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 가능.
예) A특별회계- 갑은행, B특별회계 - 을은행, C특별회계-병은행
- 기금 :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 가능.
예) A기금- 갑은행, B기금 - 을은행, C기금-병은행

⑤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2. 금고지정 방법

① 개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포함되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②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할 수 있음, 다만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함.
 -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 다. 기초자치단체가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 라.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마.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첨>의 기준으로 평가함.
 -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
 -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 다.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15)
 -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15)
 - 마.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10)
 - 바.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기타사항 (15)

- <별첨>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예시1 참조)
-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5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2 참조)

※ 주의사항 : 항목 5(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예시 1)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15)	6. 기타사항(15) - 항목 가. 000(5) 나. 000(5) - 세부항목 다. 000(5)

예시 2) 항목 6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지침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5)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5) - BIS 자기자본비율(5) - 자기자본이익율(5) - 무수익여신비율(5)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5)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0) - BIS 자기자본비율(7) - 추가배점 - 자기자본이익율(5) - 무수익여신비율(5) - 대손충당금적립율(3) - 항목추가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5)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5) 다. 공공예금 적용금리(5)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5)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5) 다. 공공예금 적용금리(5)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
3. 주민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15점)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 다.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5)	3. 주민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19점)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9) - 추가배점 다.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5)
4. 금고업무 관리능력(1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5)	4. 금고업무 관리능력(1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5) 라. OCR센터 운영계획(3) - 항목추가
5.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10) 가.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5)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계획(5)	5.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10) 가.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5)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계획(5)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②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③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관련 유의사항

가.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

-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 출연 등은 약정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등 금고지정과 상호 의존 관계가 있어야 됨

<법제처 유권해석('02.5.31)>

-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나.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금융기관인 금고에서 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후 처리

다.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다만,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기여한 실적(3. 주민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 다.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에는 추가배점 등이 가능함.

4. 금고의 지정절차

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두어야 함.

※ 자치단체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함.

가.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심의위원장 선정, 심의위원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Ⅱ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 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Ⅲ 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Ⅳ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 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①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②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보 칙

① 금고운용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②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7. 행정사항

- 이 지침은 200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I. 총괄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5)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5)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5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5점)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5)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5)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5)	
3.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기여도		15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다.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5.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10	
	가.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5)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계획	(5)	
6. 기타사항	자치단체 추가항목	15	

II.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5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금고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 (예시) 3개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시 평가등급에 따라 1등은 15점, 2등은 14점, 3등은 13점으로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5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자치단체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1)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5점)
- (2)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3)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5점)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5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4%인 경우 4.4%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5점)

-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1%인 경우 1.2%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 「금융기관의 예·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폐지('04.2월)로 금융기관의 금리가 자유화 됨.

3.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15점)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특히,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 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가능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및 계획으로 평가함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점)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5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가.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5점)

-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계획 (5점)

-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자치단체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기타사항 (15점)

○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 설정

예시) 세입의 금고계좌이체 소요기간, 금융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계획 등

※ 기타항목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각 항목에 추가할 수 있는 세부항목 예시

예시)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부분

- 총자산이익율, 대손충당금 적립율, 리스크관리현황 등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부분

-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정기에금만기경과시 적용금리 등

3. 주민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부분

- 세금 등 납부편리 증진방안,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 저소득주민 및 신용불량자 대출실적 및 계획, 지역자금 환류도 등

4. 금고관리업무 능력 부분

-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등

< 참 고 >

지방재정법령의 금고관련 조문

◆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의 약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